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7.

제 안 자 : 국토교통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가. 「공항시설법」 상 절차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(안 제11조의2).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“시설등”을 “시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)</u> <u>「공항시설법」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,</u> <u>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</u>	<u>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공사</u> <u>가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</u>

	<u>한 경우에는 공사 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 사에 귀속된다.</u> 부칙 제2조(토지와 <u>시설등</u> 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 업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이 준공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<u>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.</u> 부칙 제2조(토지와 <u>시설의</u> 귀속에 관한 적 용례)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 는 비행장개발사 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--	--	--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5.

발 의 자 : 윤재옥 · 최수진 · 김정재
권영세 · 김기웅 · 이인선
김태호 · 김성원 · 김상훈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·관리·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,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, 사용수익허가,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, 시설개선·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, 항공사,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.

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

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·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,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「공항시설법」 상 절차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(안 제11조의 2).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</u> <u>등) 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</u> <u>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</u> <u>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</u> <u>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</u> <u>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</u> <u>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</u> <u>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</u> <u>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</u> <u>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</u> <u>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</u> <u>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</u> <u>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</u> <u>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</u>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</u> <u>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</u> <u>지 아니하다.</u>